

##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
### 1. 개정 이유

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 의료기기 이상사례를 분석·평가할 때에 이상사례 발생 빈도 및 잠재요인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분석·평가하도록 이상사례 평가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이상사례 분석·평가 시 이상사례의 발생 가능성, 잠재요인, 예상된 이상사례 여부인지 등을 추가로 평가하여 보고된 이상사례에 대한 분석 및 안전관리 강화[별표 3]

### 3. 기타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의료기기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타 : (1) 행정예고(2020.8.13.~2020.9.3.)  
(2) 규제심사 : 규제신설·강화, 없음

##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- 87호

「의료기기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「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-29호, 2020.5.1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0년 9월 14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###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
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위해정도의 평가 등”을 “위해정도 등의 평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평가기준”을 “등에 대한 평가기준”으로 한다.

[별표 3]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고된 의료기기 이상 사례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# [별표 3]

## 이상사례 평가기준(제7조 관련)

### 1. 위해정도(Severity) 평가

이상사례의 세부내용 및 이상사례 표준코드를 확인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.

#### 가. 영향 없음(Negligible)

환자의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

#### 나. 경미(minor)

환자의 건강상태에 기저질환과 관련이 없는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우

#### 다. 중증(moderate)

환자의 건강상태에 기저질환과 관련이 없는 가역적인 기능(감각, 운동, 생리, 지적)의 저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우

#### 라. 심각(major)

환자의 건강상태에 기저질환과 관련이 없는 영구적인 기능(감각, 운동, 생리, 지적)의 저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우

#### 마. 치명적(critical)

환자의 건강상태에 기저질환·상태와 관련이 없는 사망 혹은 중대한 불가역적인 기능(감각, 운동, 생리, 지적)의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우

### 2. 발생 가능성(빈도)(Frequency) 평가

과거의 이상사례 보고 이력, 국내·외 수집정보 및 임상전문의 의견을 기반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.

#### 가. 매우 빈번(Very Common)

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사례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1) 최근 3~6개월 동안 한 번 이상 동일 사례가 보고된 경우
- 2) 과거에 동일한 이상사례가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3~6개월 이내

에 동일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

나. 흔한 발생(Common)

해당 의료기기 사용 중 흔히 발생하는 이상사례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1) 최근 6개월~1년 동안 한 번 이상 동일 사례가 보고된 경우
- 2) 과거에 동일한 이상사례가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6개월~1년 이내에 동일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

다. 가끔 발생(Uncommon)

해당 의료기기 사용 중 가끔 발생하는 이상사례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1) 최근 1~2년 동안 한 번 이상 동일 사례가 보고된 경우
- 2) 과거에 동일한 이상사례가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1~2년 이내에 동일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

라. 드문 발생(Rare)

해당 의료기기 사용 중 드물게 발생하는 이상사례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1) 최근 2~5년 동안 한 번 이상 동일 사례가 보고된 경우
- 2) 과거에 동일한 이상사례가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2~5년 이내에 동일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

마. 매우 드문 발생(Very Rare)

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동일한 이상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으며, 향후에도 같은 이상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.

### 3. 민감도(Sensitivity) 평가

이상사례의 발생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.

가. 외국 정부가 발표하였거나, 국내 다른 분야(예: 의약품 등)에서 발생·인지되어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나. 문헌정보, 학술발표, 시판 후 조사 등을 통해 인지되어 해당 이상사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다. 언론 등을 통해 이슈화되고 불확실한 정보 취득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

감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
라. 그 밖의 가~다까지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

#### 4. 잠재요인(Potential contributing factor) 평가

이상사례를 다시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요인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.

가. 사용상의 문제 또는 제조·운송·보관과정에서의 문제 가능성 등 이상 사례를 다시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요인이 있는지 여부

나. 추가적인 분석·평가를 통하여 합당한 교육·제조공정의 변경 등의 시정 조치를 내려 잠재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

#### 5. 예상된 이상사례 여부 평가

보고된 이상사례를 이미 제조사가 인지하고 있거나, 환자 및 시술 특성 상 발생 가능한 이상사례인지 여부를 평가한다.

#### 6. 인과관계 평가

이상사례의 발생 원인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.

##### 가. 의료기기 문제

제조사가 의도한 사용목적,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사용하였 으나, 의료기기의 고장, 오작동, 과손 등에 의해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

##### 나. 시술 상 문제

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었고 환자의 상태나 기저질환에도 문제가 없었으나 시술자의 시술에 의해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

##### 다. 환자 문제

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었고 시술자의 시술도 문제가 없었으나 환자의 상태나 기저질환에 의해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

##### 라. 평가 불능

이상사례 보고 내용과 실제 제품이 일치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이상사례의 검토 및 평가)</p> <p>① 식약처장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상사례를 수집·분석 및 평가하도록 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1. 정보의 신뢰성, 인과관계, <u>위해정도의 평가</u> 등</p> <p>2. ~ 7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및 이상사례의 위해정도 <u>평가기준</u>은 별표 3과 같다.</p>	<p>제7조(이상사례의 검토 및 평가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위해정도 등의 평가</u> 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등에 대한 평가기준</u>-- ---.</p>